『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국세청 법인세과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2021년 2월

순서 Contents

Ⅰ 신고 지원 방안

Ⅱ 신고 지원 내용

Ⅲ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Ⅰ. 신고 지원 방안”

1.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3.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확대
4.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5. 맞춤형 신고지원 안내
6.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7. 법인세 신고 안내문
8. 공익법인 신고지원 강화
9. 중견 · 중소 법인에 대한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10.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1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세정지원
12. 성실신고와 연계한 신고내용 확인 실시

국세청 법인세과
National Tax Service

I

1.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맞춤형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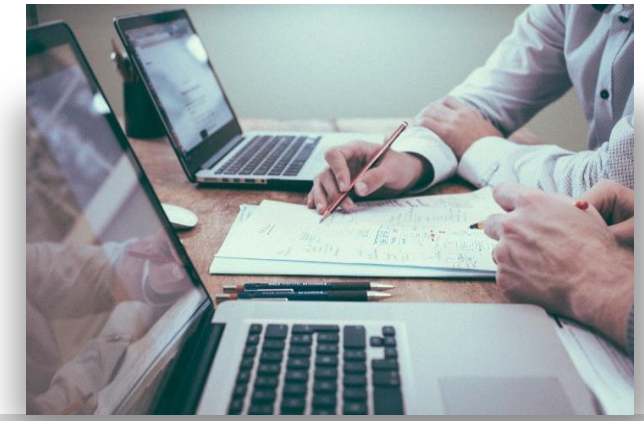

① 신고반영 추이 시각화 제공

② 모바일 조회 서비스

③ 신고오류 「자기검증서비스」

④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맞춤형 신고지원 강화

① 성격별·중요도에 따른 차별안내

②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③ 공익법인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세정지원 · 신고검증

① 코로나19 피해자 세정지원

② 신고지원 연계한 정밀한 신고 내용 확인

I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주요 안내 항목 그래프 시각화

그간의 신고반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

특정 용도의 신용카드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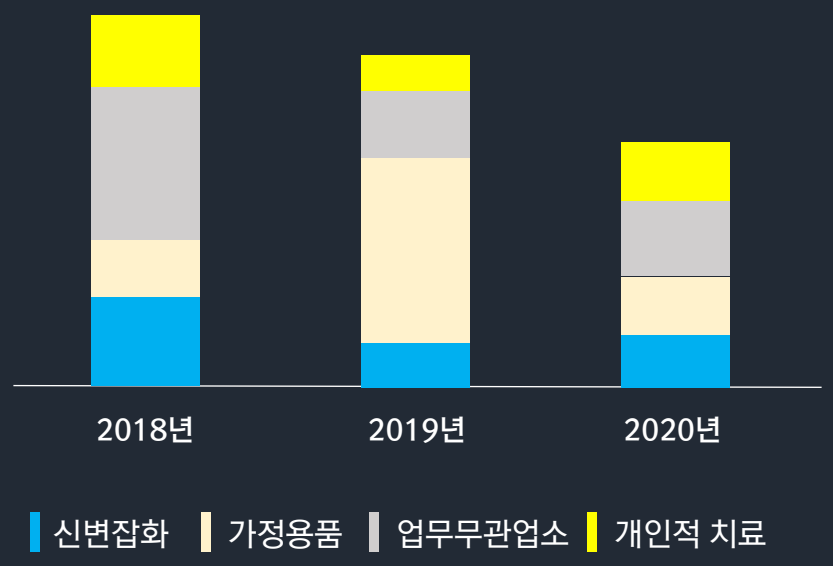

지출 증빙 수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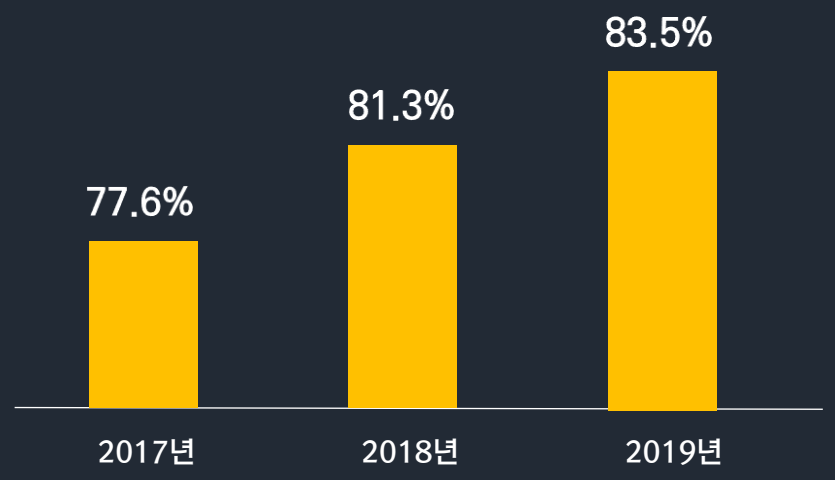

I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모바일 조회 서비스 제공

손택스 접근 순서

① 신고납부 > 법인세	②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③ 신고 도움자료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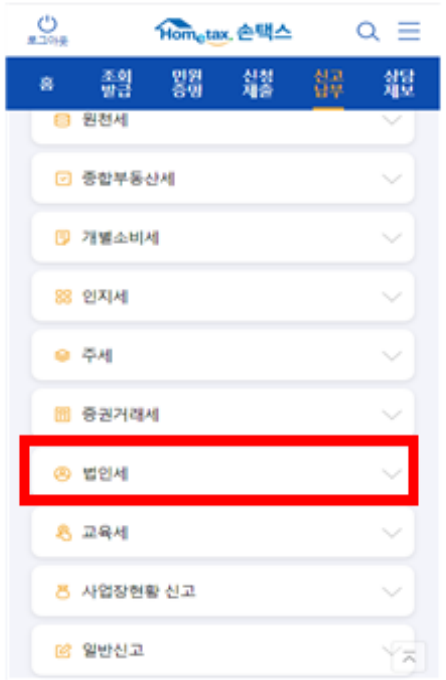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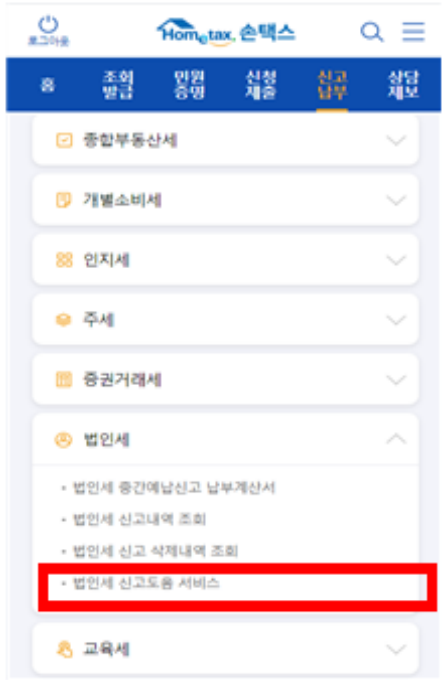

✓ 모바일 조회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 납세자별로 선별된 중요 신고 도움자료 3가지를 모바일로 바로 안내하여 서비스 효율성 극대화

모바일 조회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 시각화된 방사형 차트
• 3년간 신고반영 추이

I

3.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제공 확대

자기검증 서비스 25종으로 확대

기존 18개 제공 서비스

익금 분야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조정명세서 미제출 검증 등
- 중간예납 : 영세중소기업 중간예납 공제
- 국고보조금 :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미제출

공제 · 감면 분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초과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복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농특세 무납부
- 미환류소득 법인세 미신고 법인 검증

7개 서비스 추가 제공

익금 분야

- 결손금 :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정산
- 산출세액 : 사업연도 1년 미만 환산 적용 여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 60%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10년 경과 결손금 검증

공제 · 감면 분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 초과 여부
- 본사 수도권 재설치 법인 추가납부

I

4.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R&D 사전심사 지방청 전담팀 신설

“ 지방청 전담팀 신설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R&D 사전심사 지방청 이관

· 지방청 전담인력 증원,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제공

·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불확실성 해소, 가산세 부담 완화

I

5. 맞춤형 신고지원 안내

성격별 · 중요도에 따른 차별안내

"단순 나열식 신고도움 자료를
성격별 · 중요도별 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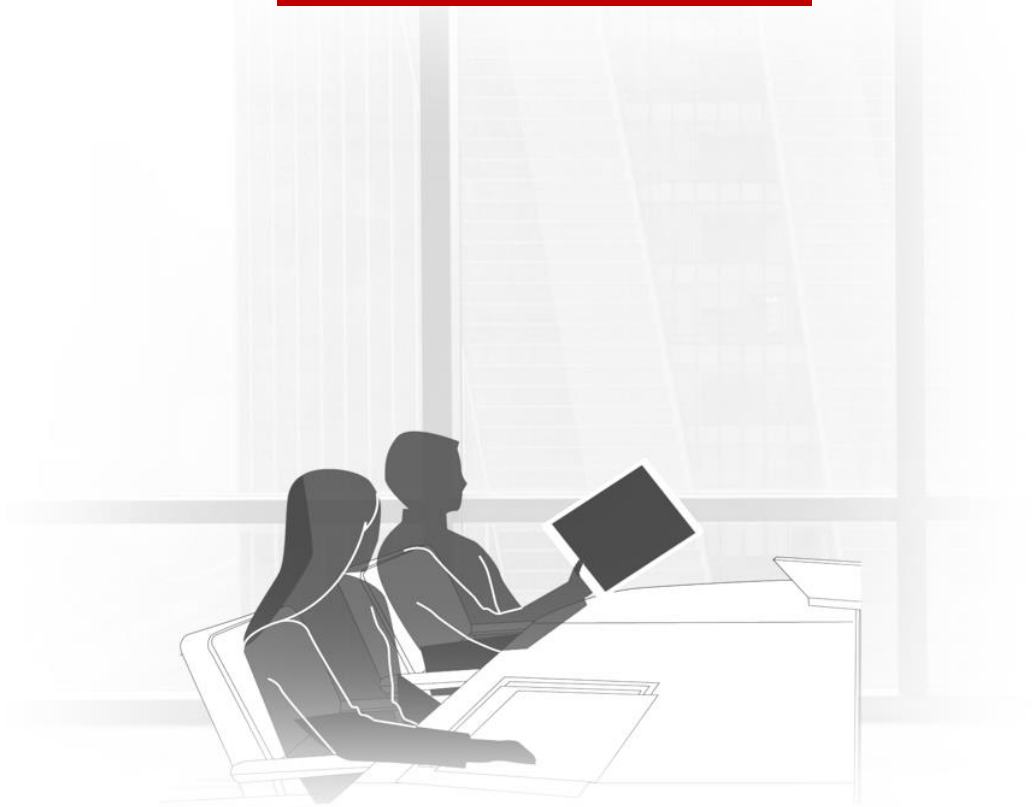

성격별 분류

외부기관 수집자료, 빅데이터 자료 등
인프라 분석에 의해 혐의 금액 등이 특정되는 항목

중요도별 분류

대상 법인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안내 항목 중요도 순위 선정

I

6.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모바일 신고 안내 도입

1인주주,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등

소규모법인 대표자에게 직접 안내

- ✓ 모바일 신고안내문
- ✓ 주요 안내항목 3가지

STEP ONE 문자수신 → 열람하기

[국세청] 법인세 (정기)신고 안내문

[Web발신]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귀하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리며,
'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홈택스]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법인세

아래 '열람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상세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2021년 4월 30일까지
○ 열람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SMa0k0kaAakKD4x (접속 무료)

I

6.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모바일 신고 안내 도입

1인주주,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등

소규모법인 대표자에게 직접 안내

- ✓ 모바일 신고안내문
- ✓ 주요 안내항목 3가지

STEP TWO 본인 인증

I

6.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모바일 신고 안내 도입

STEP THREE 신고도움자료 열람

1인주주,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등

소규모법인 대표자에게 직접 안내

✓ 모바일 신고안내문
✓ 주요 안내항목 3가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2018사업연도 주요 지표 비교분석

주요지표	자체율(%)	평균율(%)
소득률	5.1	15.8
영업이익률	4.5	13.5
주요경비율	54.7	50.2
원가율	40.8	36.3
인건비 비율	6.0	1.9

○ 종합분석

▫ 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은 반면, 원가율과 인건비 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원가 등 비용 절감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평균율은 동종업종 영위 법인 중 수입금액 100~300억원 구간 법인의 평균입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111

▫ 아래는 귀 법인이 보유한 2019년 신용카드 총사용금액입니다.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가 검토되오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 카드번호 : 5678001045556777 , 카드사용금액 : 223백만원
○ 카드번호 : 5555000102810044 , 카드사용금액 : 685백만원

I

7. 법인세 신고 안내문

안내문 발송

2020년 이후
설립·폐업 법인
12만 5천개 법인에게
2월 25일부터 발송

2021년 법인세 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1년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오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납부에 관한 사항

- **신고·납부기한 : 3월 31일 까지(성실신고확인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4월 30일까지)**
- **분납기한 :** 일반기업은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 분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신고대상법인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 · 납부 방법

- **전자신고** (이용시간 : 06:00 ~ 24:00)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 ~ 23:30, 단 카드납부는 00:30 ~ 23:30)
  - 홈택스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국세납부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모바일 납부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계좌이체 : 납부서상 전자납부번호(국세계좌)로 계좌이체(인터넷은행, 증권사 계좌 사용불가)
  - 신용카드 납부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방법(신용카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방법

- **접근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또는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②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맞춤형 절세 Tip, 세법도우미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에서도 법인세 신고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세 무 서 장 (직인생략)

I

8. 공익법인 신고지원 강화

공익법인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성실공시 지원

- 공시오류 예방시스템 구축, 회계담당자 온라인 교육 등

관리체계 구축

-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전환, 기부금단체 관리 일원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

사후검증 강화

- 계열·비계열 공익법인 검증 지속, 빅데이터를 통한 특수관계 분석자료 구축

I

9. 중견 · 중소법인에 대한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맞춤형 신고안내 확대 · 고도화

개별분석 자료

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이 있는 법인

1인주주 법인 등 기업자금 변칙사용

취약분야 자료

영업권 등 보상금 수령한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한 법인

업종별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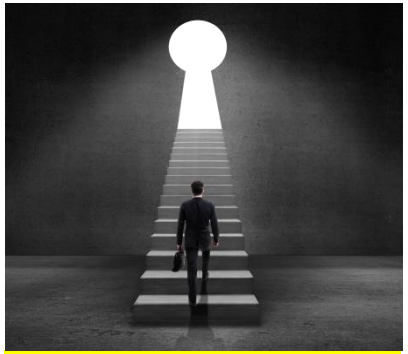

조사 등 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업종별 공통사항안내

계정과목별분석 자료

최근 3년간 조사, 검증에서 주요 적출사항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

I

10.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전용 상담창구 · 공제감면 전담팀 운영

세무서

중소법인 ·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팀장과 법인별 안내담당이 신고지원 항목을 설명하고
신고방법 등을 안내

지방청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상담팀 운영

중소법인이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안내

본 · 지방청

세무상담 핫라인 운영('21년 2~3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과
본 · 지방청 직원 간 핫라인 개설

I

10. 중소법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세무상담 핫라인 운영

본 · 지방청

세무상담 핫라인 운영('21년 2~3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 노랑우산 경영지원단

소 속	성 명	전화	소 속	성 명	전화
본 청	정지선	044-204-3323	대전청	황남돈	042-615-2467
본 청	이만호	044-204-3324	광주청	박형민	062-236-7467
본 청	강수원	044-204-3325	대구청	김현섭	053-661-7467
서울청	이남경	02-2114-2927	부산청	부산청	051-750-7445
중부청	이효경	031-888-4845	인천청	강지수	032-718-6486

I

1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직권 · 신청]

납부기한 직권 연장 (3개월)

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 업종 : PC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②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납부기한 신청 연장 (3개월)

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영위 법인이 신청시 납기연장
· 피해업종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② 세무대리인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이 신청시 신고기한 연장도 허용

I

12. 성실신고와 연계한 신고내용 확인 실시

자발적 성실신고 세원관리 체계 확립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엄정 검증

사전안내 신고반영 여부 검증을 위해

신고안내 자료 분석 참고자료를 일선에 제공

“Ⅱ. 신고 지원 내용”

1.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설명
2. 신고안내 주요항목 – 개별 분석
3. 신고안내 주요항목 – 업종별 분석
4. 신고안내 주요항목 – 공통 분석
5. 신고안내 주요항목 – 계정과목별 분석
6. 신고안내 주요항목 – 맞춤형 절세 Tip
7. 신고안내 주요항목 – 세법도우미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국세청 법인세과
National Tax Service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Ⅱ-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설명

Ⅱ- 1 법인납세자 신고화면

홈택스 로그인 화면 (법인납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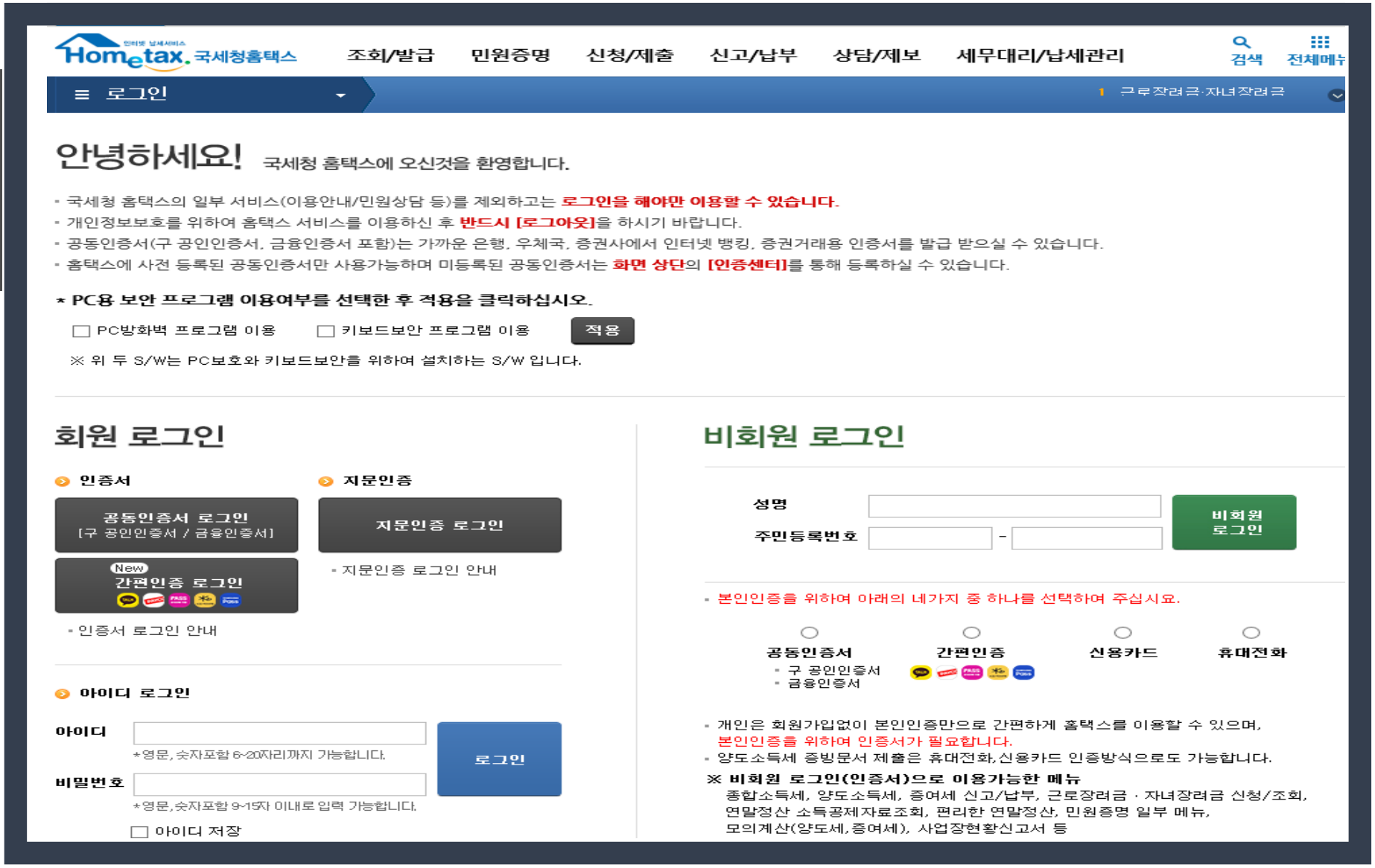

Ⅱ- 1 법인납세자 신고화면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법인납세자)

Hometax.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고/납부 | 상담/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 검색 | 전체메뉴

≡ 법인세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 2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

– 2021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사업자등록번호 101 - | * 사업연도 2020 | 조회하기 | 일괄 출력

2021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

◈ 유의사항

1.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 법인2팀 파한자 (☎ 000-0000-00000)

주요안내 | 기본사항 | 기업 분석자료 | 신고시 유의사항 | 절세 Tip | 세법도우미

2019사업연도 주요 지표 비교분석 (㈜2021테스트) | 주요안내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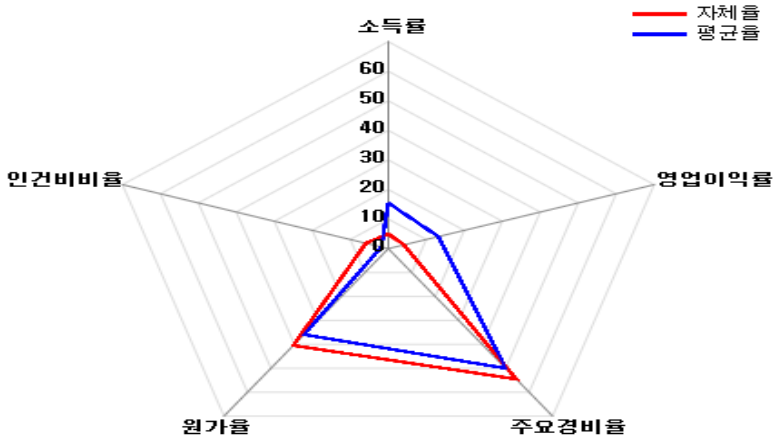

주요지표	자체율(%)	평균율(%)
소득률	5.1	15.8
영업이익률	4.5	13.5
주요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54.7	50.2
원가율	40.8	36.3
인건비비율	6.0	1.9

<종합분석>소득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은 반면, 원가율과 인건비 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원가 등 비용 절감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평균율은 동종업종 영위 법인 중 수입금액 100~300억원 구간 법인의 평균입니다.

Ⅱ- 1 세무대리인 신고화면

홈택스 로그인 화면 (세무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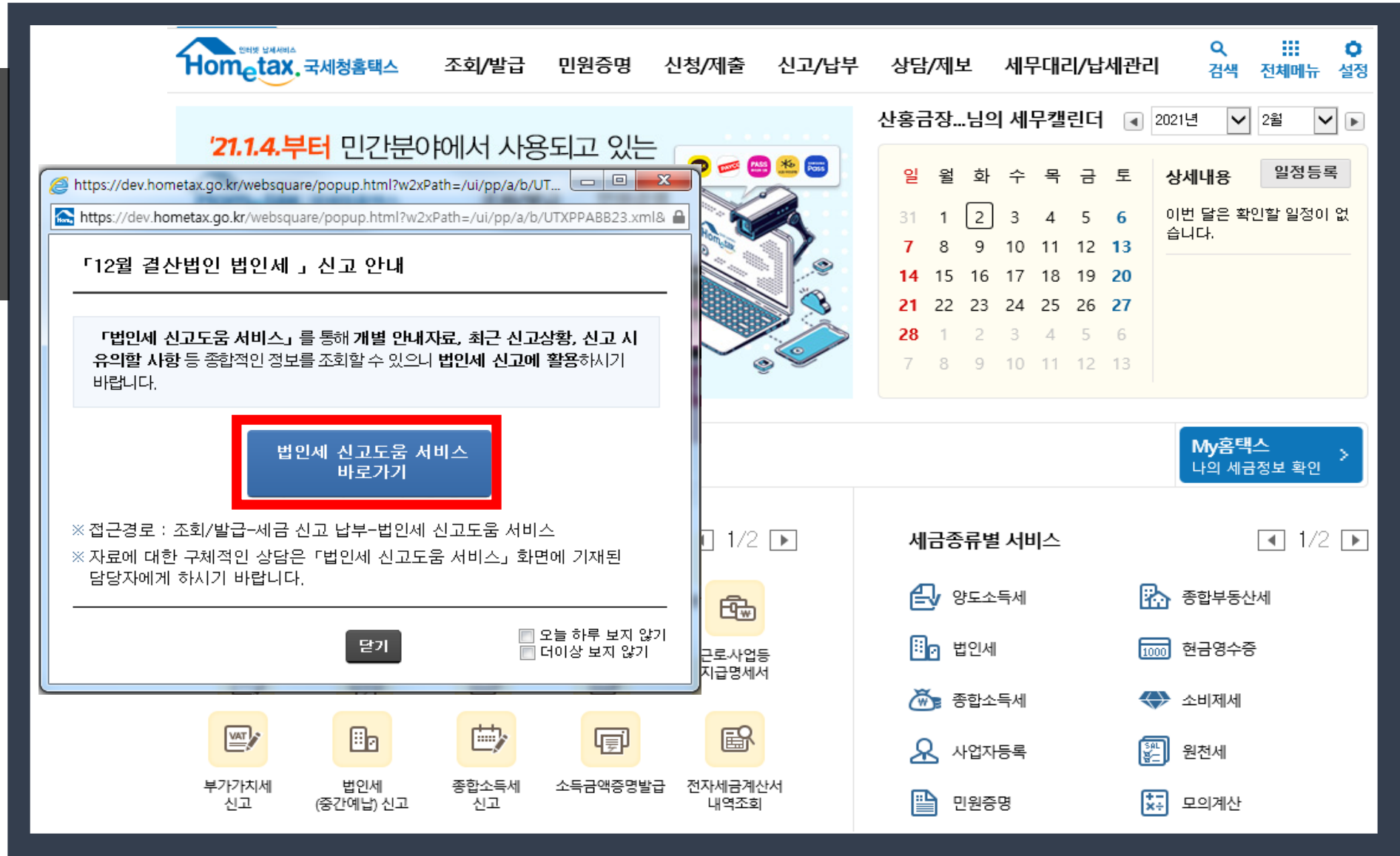

Ⅱ- 1 신고 안내자료 화면

신고 안내자료 화면 (6개 탭)

Hometax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고/납부 | 상담/제보 | 검색 | 전체메뉴

≡ 법인세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 7 홈택스안내

- 2021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사업자등록번호 101 - [ ] * 사업연도 2020 | 조회하기 | 일괄 출력

2021년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

◈ 유의사항

1. 본 자료는 법인세 신고안내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법인세 신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료는 정기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정신고, 고지 등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마포세무서 법인세과 법인3팀 (☎)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2019사업연도 주요 지표 비교분석 ((주) 그라비티)

주요안내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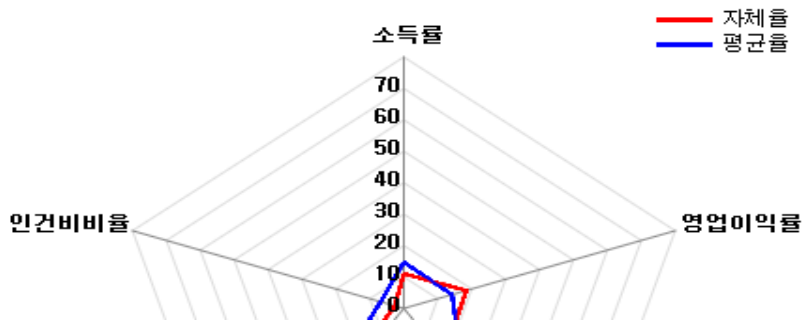

주요지표	자체율(%)	평균율(%)
소득률	11.3	15.2
영업이익률	18.8	14.7
주요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19.0	29.2
원가율	62.2	55.9
인건비비율	2.9	7.3

Ⅱ- 1 신고도움 자료 6개탭 주요 내용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기업 체질분석 주요안내 사항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최근 3년) 참고할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내용,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주주현황)	기업 분석자료 ①매출액 대비 주요판관비 현황 ②신용카드 사용현황 ③지출증빙 수취현황 ④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신고시 유의사항 ①개별 분석자료 ②업종별 분석자료 ③계정과목별 분석자료	절세 Tip ①업종별 절세 Tip ②법인별 절세 Tip	세법도우미 ①참고할 세법규정 ②주요 개정세법

Ⅱ- 1 ① [주요안내 탭]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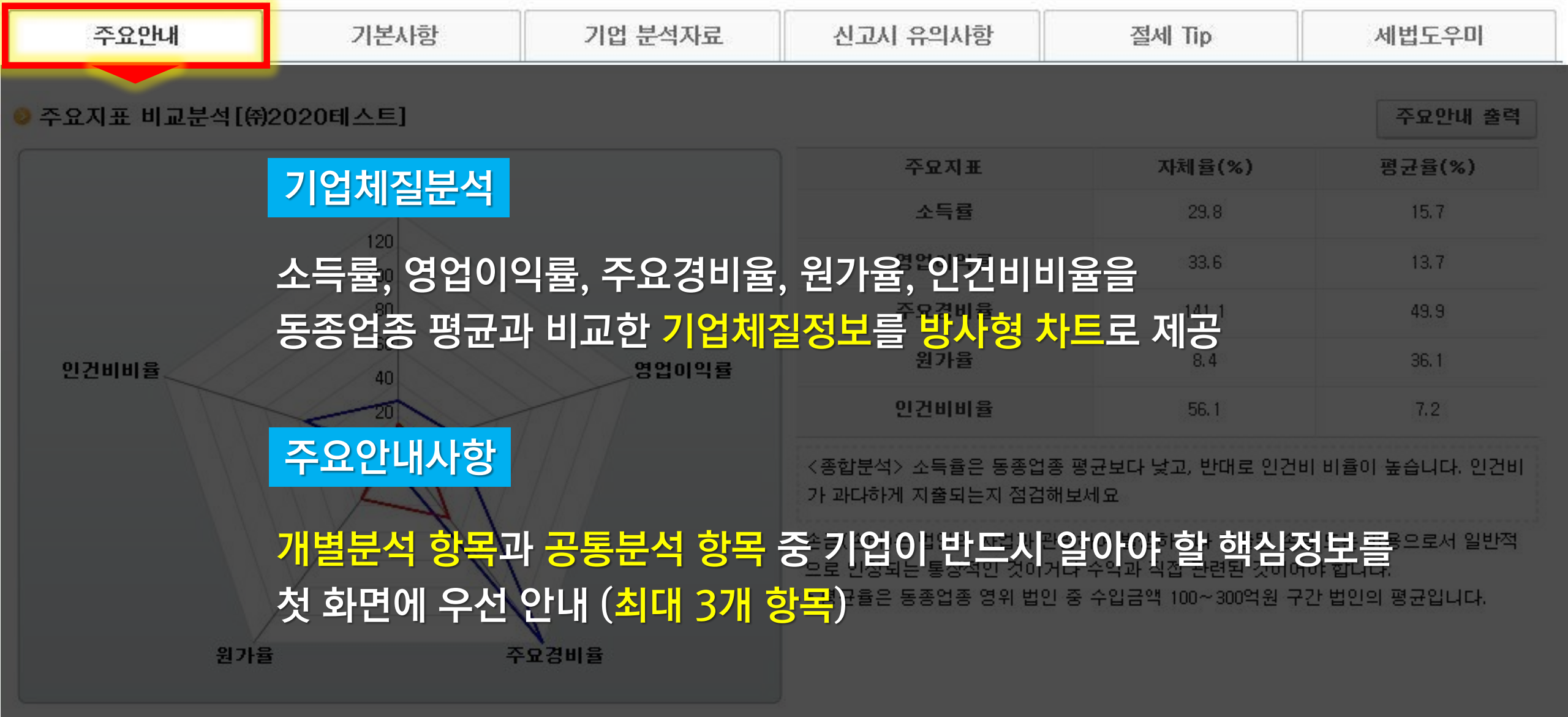

기업체질분석

소득률, 영업이익률, 주요경비율, 원가율, 인건비비율을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한 **기업체질정보**를 **방사형 차트**로 제공

주요안내사항

개별분석 항목과 **공통분석 항목** 중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 우선 안내 (**최대 3개 항목**)

Ⅱ- 1 ② [기본사항 탭]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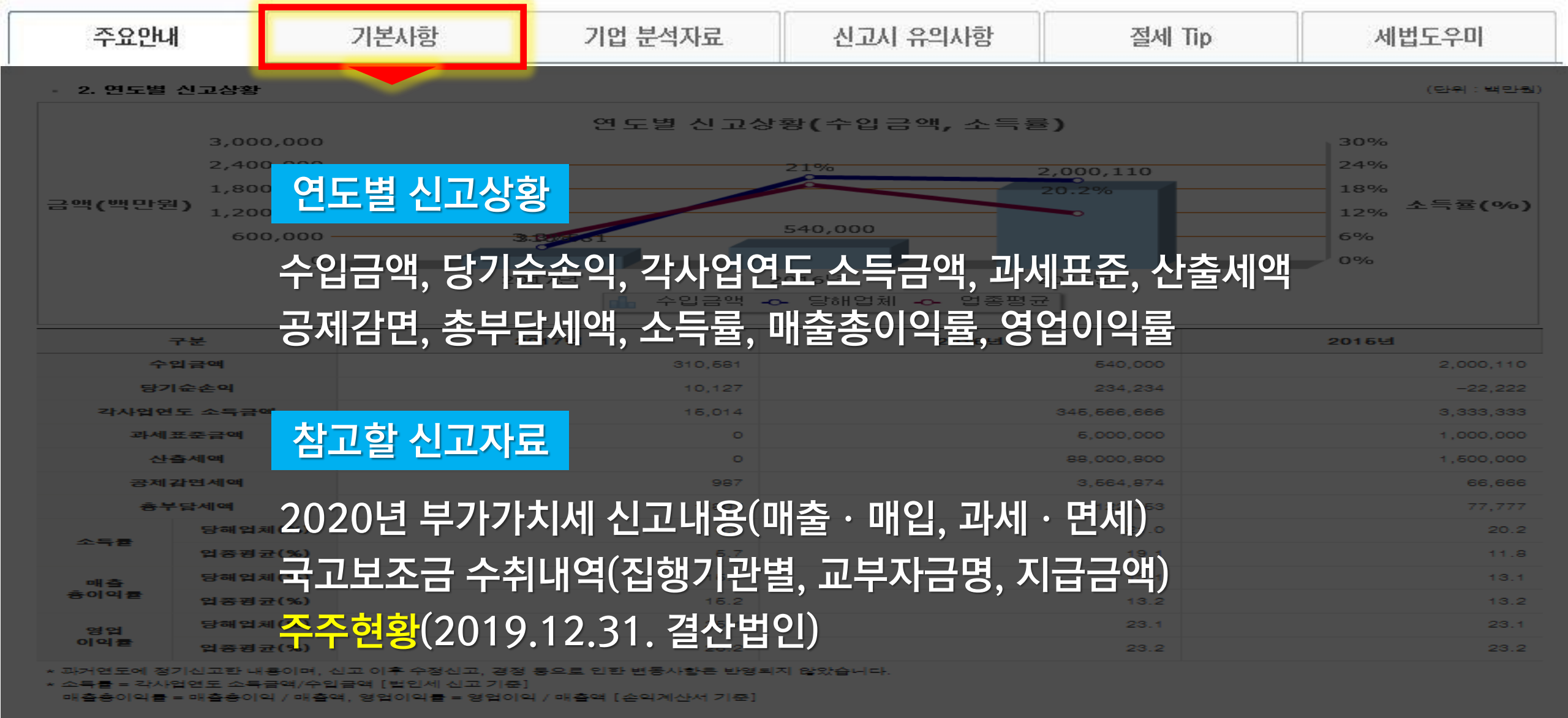

연도별 신고상황

수입금액, 당기순손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 총부담세액, 소득률,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참고할 신고자료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매출 · 매입, 과세 · 면세)
국고보조금 수취내역(집행기관별, 교부자금명, 지급금액)
주주현황(2019.12.31. 결산법인)

Ⅱ- 1 ③ [기업 분석자료 탭] 안내사항

주요안내 | 기본사항 | **기업 분석자료** | 신고시 유의사항 | 절세 Tip | 세법도우미

표준 I/S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 현황

업종평균 매출액 대비 주요판관비 계정과목별 비율 비교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2020년) 최근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제공

신변잡화 · 가정용품구입, 업무무관업소이용, 개인적치료, 해외사용액

지출증빙 수취현황 최근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제공

수취대상금액, 증빙수취금액, 차이금액, 증빙수취비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Ⅱ- 1 ④ [신고시 유의사항 탭] 안내사항

주요안내 | 기본사항 | 기업 분석자료 | **신고시 유의사항** | 절세 Tip | 세법도우미

개별 분석자료 해당 법인 제공 (45개 항목)

기업자금 변칙사용, 사업소득 허위지급 법인 등

업종별 분석자료 해당 법인 제공 (127업종)

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업종 공통사항(발전업, 수산양식업 등)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해당 법인 제공

최근 3년간 검증에서 주요 적출되는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제공

Ⅱ- 1 ⑤ [절세 Tip 탭] 안내사항

주요안내 | 기본사항 | 기업 분석자료 | 신고시 유의사항 | 절세 Tip | 세법도우미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주업종이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인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가 단축(기준내용연수 10년→4년)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 안내	17.1.1.이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금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법인별 절세 Tip**

업종별 · 법인별 절세 Tip 해당 법인 제공

안내사항	안내내용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illegible] 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인정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서 100%, 이후 그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60% 법인세가 감면됨을 안내하오니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위탁·공동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되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 법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등 세제혜택 안내

* 절세 Tip을 신고에 반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1 ⑥ [세법도우미 탭] 안내사항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66의2)	법인이 법령에 따른 일정한 주택 및 별장(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10%(미등기의 경우 40%)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일정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재료비 등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44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그 외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44④(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기준은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합니다.

세법도우미 확대 **해당 법인 제공**

사전안내와 연관되는 세법내용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개별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내

- **2. 주요 개정세법**

안내사항	안내내용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법인세법§44②, §44의3③, §46의3③, §47③)	[illegible]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illegible] 80% 이상을 유지 * 20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기업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29의2)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 –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세액공제 * 2018.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7)	○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 : 1억원 – (감소 고용인원x5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62, 63의2)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식 개선(급여비율에 의한 계산방식 삭제)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 이전본사근무인원 비율 * 20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Ⅱ-2

신고안내 주요항목
개별 분석

2.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개별분석

(20년) 40개 항목, 23만개 법인에게 안내

2020년

45개 항목, 25만개 법인에게 확대하여 안내

2.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개별분석

항 목	
1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
2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3	상품권 과다구입 법인
4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5	고액의 소송비용을 계상한 법인
6	고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계상한 법인
7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미가입한 법인
8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빅데이터 분석)
9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안내(기업자금변칙유출)
10	건설업 법인 등의 일용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 안내

2.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개별분석

항 목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
12	부동산(주택) 법인의 기업자금변칙유출 등 안내
13	특정시설물(고가 콘도, 요트)의 사적사용 혐의 법인
14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혐의 법인
15	사업소득 허위지급 혐의가 있는 법인
16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에 대한 과세조정 누락 혐의 법인
17	국외특수관계인에 이자를 부당하게 지급한 법인
1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 부당매입 혐의 법인(빅데이터 분석)
19	비사업용 주택 양도 법인
20	비사업용 토지 양도 법인

2.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개별분석

항 목	
21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법인
22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외원천소득 수취 법인
23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법인
24	주주(지분)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25	건설자금이자 계상 누락 혐의 법인
26	법인세 추납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혐의 법인
27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
28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있는 법인
29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 안내
30	면세점으로부터 여행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법인

2.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개별분석

항 목	
31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한 법인의 세무조정 안내
32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의 세무조정 안내
33	주택임대 법인 중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 법인
34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안내
35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한 법인(연구전담부서 취소)
36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한 법인(출연금 수취)
37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한 법인(감면기간 만료)
38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 법인(수도권 소재 중기업 등)
39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한도 초과 법인
40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감면율 과다적용)

2.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개별분석

항 목	
4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법인(사회적기업 등 인증취소)
42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감면을 받은 법인(해산명령 등을 받은 법인)
4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한 법인(특수관계인의 사업장과 동일 소재지 개업, 빅데이터 분석)
4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한 법인
45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법인

Ⅱ-3 신고안내 주요항목 업종별 분석

Ⅱ- 3. 업종별 분석자료

발전업, 연예인매니지먼트업, 학술지출판 · 도소매업, 정기항공운송업, 온라인정보 제공업, 목욕업
스키리조트업, 보습학원, 통신장비도매업, 작물도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업, 상품 종합 도매업
제화 제조업, 상품 종합 수출업, 통신기기 소매업, 대부업,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업, 캠핑장운여업
종합병원, 지류 도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전구 및 램프 등 조명기구 제조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인력공급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세탁업,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섬유염색 가공업
전기 · 통신 등 전문직별공사업, 택시운송업, 낙공단, 인삼식품, 차류 등 가공업, 가금류가공업
액체연료도매업, 스포츠용품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차량용 연료 도소매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유리 · 창호 등 전문직별 공사업, 전자상거래업, 레미콘 제조업, 버스운송업,

127개 업종 법인에게 안내

소사장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침구류 등 제조업, 의료 · 정밀 및 과학기기 도소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철강업, 골재 채취업, 해면어업, 수산물 유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건설업, 변호사업, 의류소매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수산양식업, 농업법인, 석유화학업, 제약업,
일반교습학원, 인쇄업, 제지업, 기계제조업, 물류창고업, 건축자재 도매업, 가전제품 도소매업,
식자재 도매업, 도장공사업, 화장품 · 세제 등 제조업, 요원원료 제조업, 석재가공업, 운동용품 도매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화장품 도매업, 여행사업, 호텔업……

Ⅱ- 3. 업종별 분석자료

안내 예시

안내 사항	안내 내용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 전력발전 보조금(발전차액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 • 직접 운송한 유연탄 등에 대한 운송비를 사실과 다르게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 • 태양광 발전업의 경우 자금 차입 및 차입금 상환시 사실과 다르게 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Ⅱ-4 신고안내 주요항목 공통 분석

4.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공통분석

번호	검토항목
1	합병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2	분할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4	부동산을 양도한 비영리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5	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6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있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7	감자 등의 대가를 수취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8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9	기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4.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공통분석

번호	검토항목
10	유보처분 금액이 있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1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3	충당금(충당부채)을 설정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용하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5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16	세무조사 이후 신고 소득률이 감소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7	고액 수선비를 계상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18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4.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공통분석

번호	검토항목
19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경영자문료 등을 지급한 법인이 유의할 사항
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안내
21	계열사 간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22	주주 등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23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관련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24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25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 처분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26	건축물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2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4.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공통분석

번호	검토항목
28	법인전환한 기업의 신고시 유의사항
29	특허권 등을 취득·대여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0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1	해외시장개척비 등을 개상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2	가지급금 등을 회수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3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4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35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 시 유의사항
36	대표자 차임금 등을 장기보유 또는 변제한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4. 신고안내 주요 항목 – 공통분석

번호	검토항목
37	국내사업장 협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
38	동일 고용에 대해 공제 신청시 법인이 유의할 사항
39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고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40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시 유의할 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법인

분석 배경

법인세법 §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불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차량별로 작성하지 않고 다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는 사례 발생

분석 방법

- ’19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차종에 비해 고가의 관련비용이 발생한 법인

개별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8호]는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 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다수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법인

분석 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 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사례 발생

분석 방법

- ’18 · 1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적용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4번)한 법인으로** 선택사업연도에 ’20사업연도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

개별 안내내용

(가지급금인정이자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법인이 신고시 유의사항)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의 가수금을 장기보유 또는 일시 변제한 법인

분석 배경

법인세법 §19 [손금의 범위]

매출누락 대금을 대표자 명의로 입금하고,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차입금(대표자 등 가수금)을 일시 변제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발생

분석 방법

- 법인세 신고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주주 · 임직원 차입금 계정과 표준대차대조표 차입금 계정이 3년간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개별 안내내용

(대표자 차입금 등을 장기보유 또는 변제한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귀 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 · 임직원 차입금 감소금액과 보유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차입금을 반환하였는지, 채권 · 채무관계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주주 · 임직원 차입금 감소금액 : 000백만원, 2019년 주주 · 임직원 차입금 보유금액 : 000백만원**

Ⅱ-5 신고안내 주요항목 계정과목별 분석

Ⅱ- 5.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번호	계정과목	검토항목
1	수입금액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2	매출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 회수하였는지 확인
3	해외 특수관계인 거래	현지법인 대여금 등의 부당 대손처리, 채무 대위 변제액에 대한 채권 누락
4	대여금	특수관계인 대여금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여부 확인
5	유형자산	법인의 자산을 업무목적 외 사용(사적사용 포함)하였는지 여부 확인
6	유 · 무형자산	유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정성 및 당기 손금 처리 여부 확인
7	매출 · 매입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
8	판매비와 관리비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
9	판매비와 관리비	적격증빙 수취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확인

Ⅱ- 5.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번호	계정과목	검토항목
10	판매비와 관리비	업무무관비용이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1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2	복리후생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3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 하였는지 여부
14	재료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5	지급수수료, 출장비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6	이자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특정차입금 이자를 당기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7	수선비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 손금처리 하였는지 여부
18	임원퇴직금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5.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번호	계정과목	검토항목
19	인건비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산입 하였는지 여부
20	이자비용, 유지보수비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21	기부금	주식 고가 취득, 후원금 등 비지정기부금 성격의 지출액이 있는지 확인
22	공동경비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ERP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 과다부담 하였는지 여부
23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인 채권, 회수채권 등 충당금 설정제외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4	대손금	임의포기채권, 대손시기 미도래 채권 등이 대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5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 소송에 따른 채무 미확정 등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확인
26	세금과 공과	벌과금, 과태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확인
27	퇴직급여 충당금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 임원 퇴직금, 과다 지급한 임원 급여 등 여부 확인

Ⅱ- 5.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번호	계정과목	검토항목
28	경정내역	최근 1억원 이상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29	매출 · 매입	매입원가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계상여부
30	성과배분 상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31	비사업용 토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32	고정사업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확인

Ⅱ- 5. 계정과목별 분석자료

안내 예시

계정과목명	안내 내용
수입금액	• 영업외수익, 부가가치세 과 · 면세 매출과표 등 수입금액 관련항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 사업연도 중 회수한 매출채권이 기말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와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Ⅱ-6 신고안내 주요항목 맞춤형 절세 TIP

6. 신고안내 주요 항목 – 맞춤형 절세Tip

번호	검토항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의 세액공제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신청 중소기업 법인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미신청 중소기업 법인
4	특허권 등 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법인
5	특허권 등 양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중견, 중소법인
6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법인
7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된 중소기업 법인
8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 해당 법인
9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위탁 · 공동연구개발 등 R&D세액공제 확대 법인

6. 신고안내 주요 항목 – 맞춤형 절세Tip

번호	검토항목
10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
11	영상콘텐츠 제작업 영위 법인
12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13	중복공제 허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
14	고용증대세제 신설 안내
1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인
16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법인
17	상생결제대금 지급 법인
18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중소 및 특정 중견 법인
19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법인

6. 신고안내 주요 항목 – 맞춤형 절세Tip

번호	검토항목
20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2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2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안내
24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
25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6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27	생계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2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29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사회적 기업
30	기준내용연수가 단축된 가죽, 가방 등 업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의 세액공제

안내 개요

조특법 § 96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에 세제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자 추출

- ’19.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상가임대업종으로 신고한 법인

개별 안내내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의 세액공제 안내)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리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

안내 개요

법인세법 § 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공제순서 변경, 손금산입 한도 초과로 계속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조정
  - (확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대상자 추출

- '19사업연도에 기부금 공제를 적용 받고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법인
  - 기부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2번 한도초과액 합계가 0보다 큰 법인

개별 안내내용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부금 공제순서 안내)

2020.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기부금 손금산입시 **법인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공제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부금 공제순서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된 중소기업

안내 개요

조특법 §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신성장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 (확대)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법인은 산식상 비율에 75%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시 비율 100% 적용

대상자 추출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 2019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자 월평균 인원 〈 20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자 월평균 인원

개별 안내내용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Ⅱ-7 신고안내 주요항목
세법 도우미

7. 신고안내 주요 항목 – 세법도우미

참고할 세법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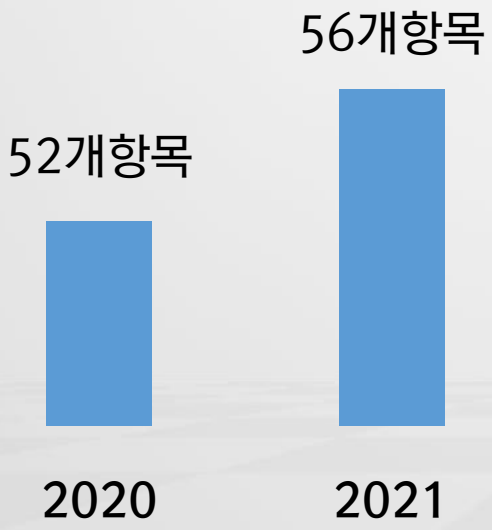

주요 개정 세법

86개 항목을 법인에 안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신고도움 서비스

Ⅱ-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검토서식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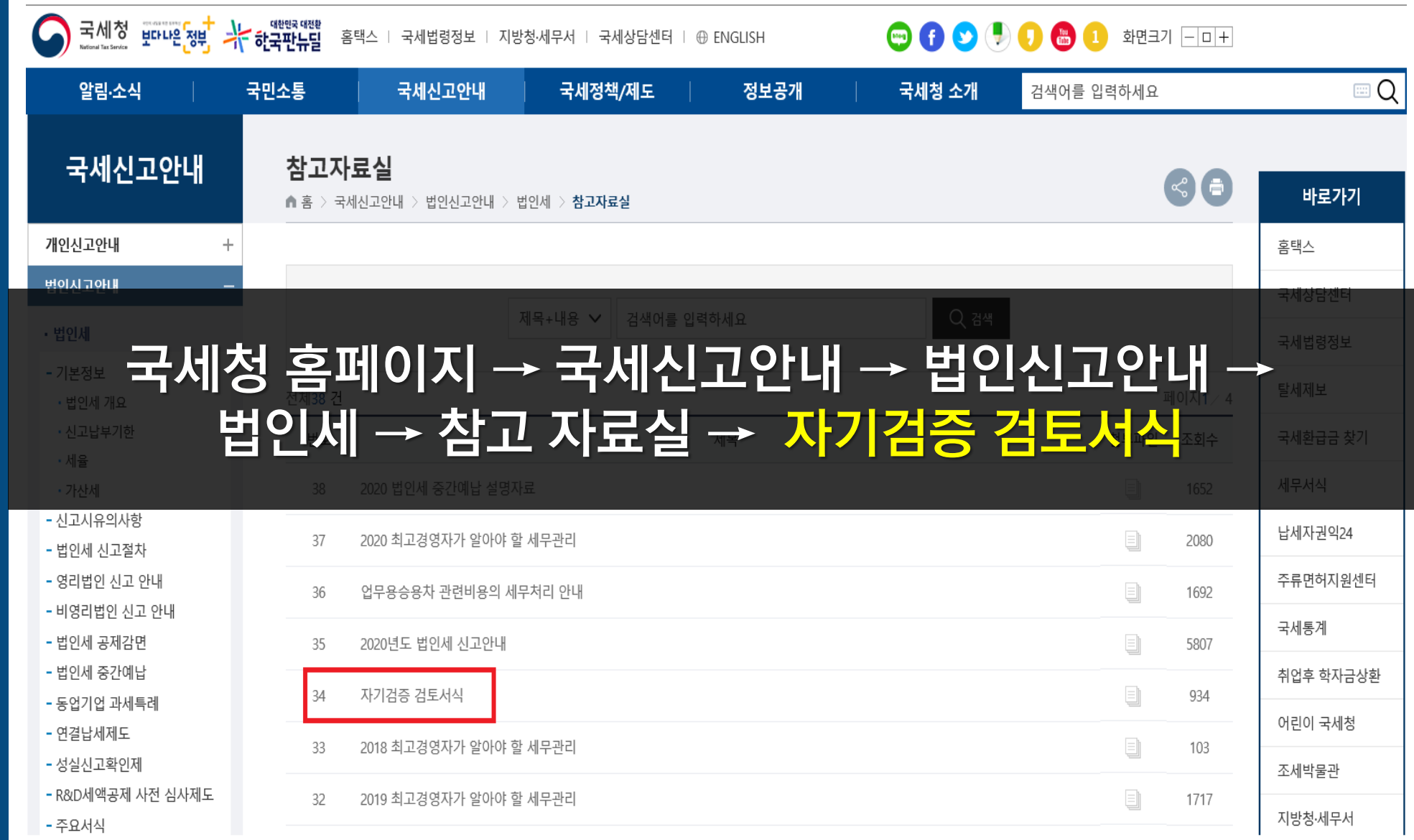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 자료실 → **자기검증 검토서식**

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

2019년 : 14종

- 지출증명 서류
- 중소기업 요건
- R&D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 R&D세액공제 인건비
- 업무용승용차 비용검토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성실신고확인제도
- 이월결손금 공제

2020년 : 16종

- 지출증명 서류
- 중소기업 요건
- R&D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 R&D세액공제 인건비
- 업무용승용차 비용검토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성실신고확인제도
- 이월결손금 공제
- 대손금 요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1년 : 18종

- 지출증명 서류
- 중소기업 요건
- R&D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 R&D세액공제 인건비
- 업무용승용차 비용검토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성실신고확인제도
- 이월결손금 공제
- 대손금 요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접대비 세무조정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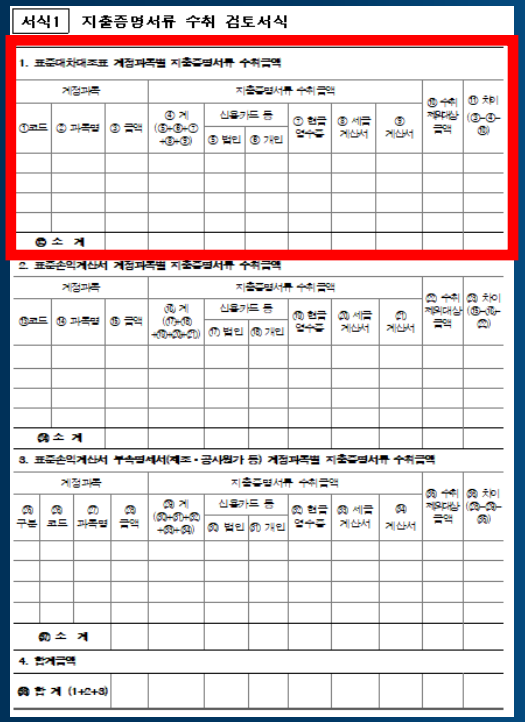
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① 구분	② 코드	③ 과목명	④ 금액	⑤ 계 (⑥+⑦+⑧+⑨+⑩)	신용카드 등		⑧ 현금 영수증	⑨ 세금 계산서	⑩ 계산서	⑪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⑫ 차이 (④-⑤-⑪)
					⑥ 법인	⑦ 개인					
⑬ 소 계											

4. 합계금액

⑭ 합 계 (1+2+3)									

서식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 3-1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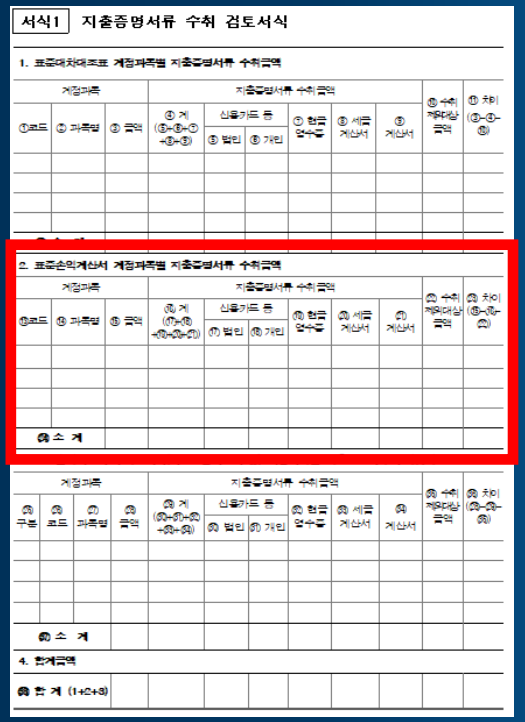

서식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 3-2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㉒ 수취 제외대상 금액	㉓ 차이 (⑮-⑯-㉒)
⑬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⑲+⑳+㉑)	신용카드 등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㉑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㉔ 소 계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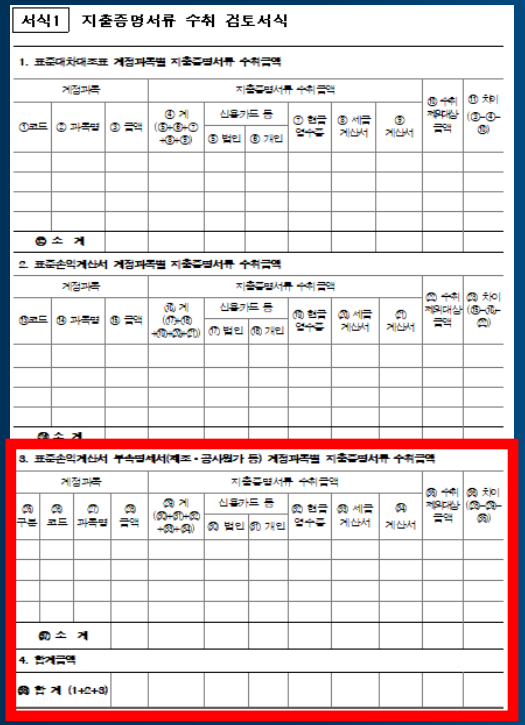
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4. 합계금액

서식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 3-3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 · 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㉟ 수취 제외대상 금액	㊱ 차이 (㉘-㉙-㉟)
㉕ 구분	㉖ 코드	㉗ 과목명	㉘ 금액	㉙ 계 (㉚+㉛+㉜+㉝+㉞)	신용카드 등		㉜ 현금 영수증	㉝ 세금 계산서	㉞ 계산서		
					㉚ 법인	㉛ 개인					
㊲ 소 계											

4. 합계금액

㊳ 합 계 (1+2+3)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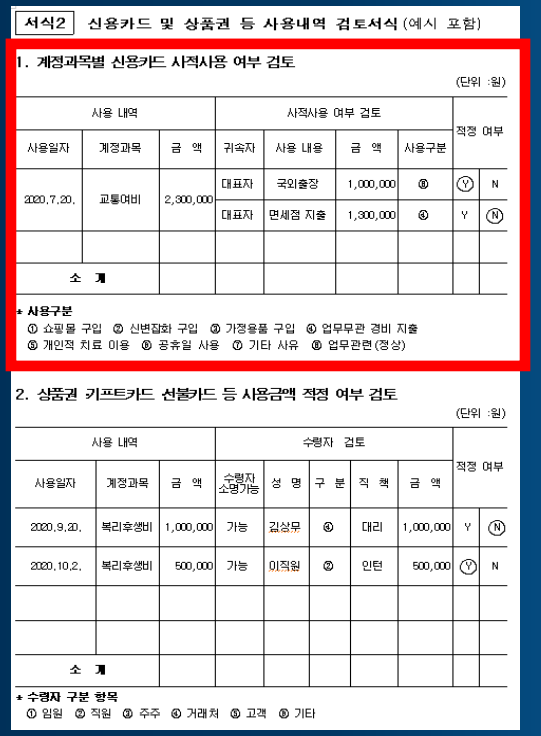

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예시 포함)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20.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20.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김상무	④	대리	1,000,000	Y	Ⓝ
2020.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 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 2-1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20.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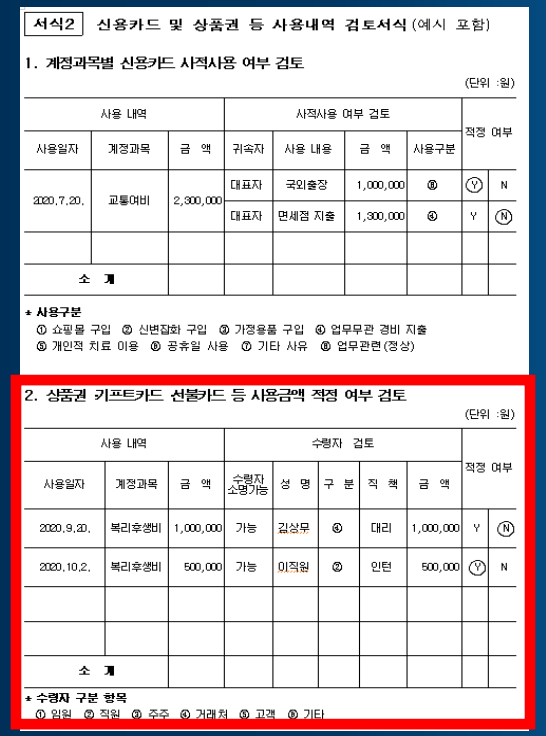

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예시 포함)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20.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20.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김상무	④	대리	1,000,000	Y	Ⓝ
2020.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 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 2-2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20.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김상무	④	대리	1,000,000	Y	Ⓝ
2020.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 2-1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업무용 승용차 범 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예 아니오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아니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 : 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예 아니오

서식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업무용 승용차 범 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예 아니오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아니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 : 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예 아니오
업 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예 아니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감가상각비 (상 당 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감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예 아니오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아니오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 2-2

업 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예	아니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감가상각비 (상 당 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예	아니오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아니오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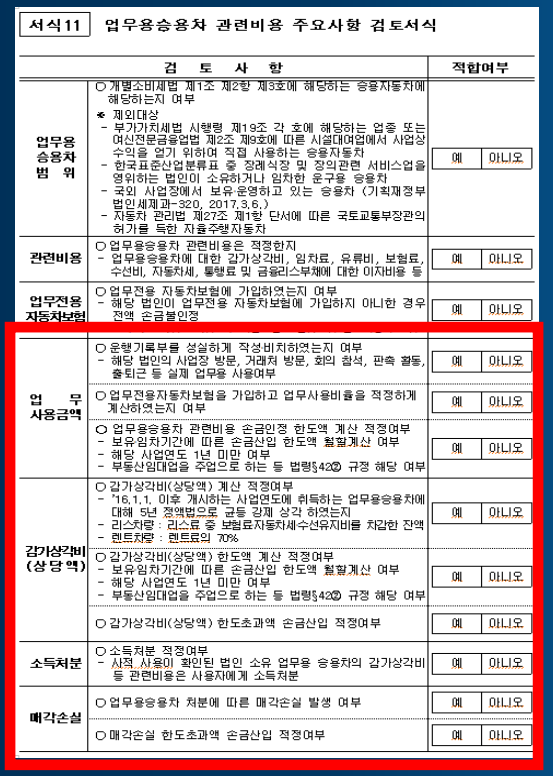

서식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업무용 승용차 범 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예	아니오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아니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잔액 손금불인정	예	아니오
업 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예	아니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감가상각비 (상 당 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예	아니오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아니오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7

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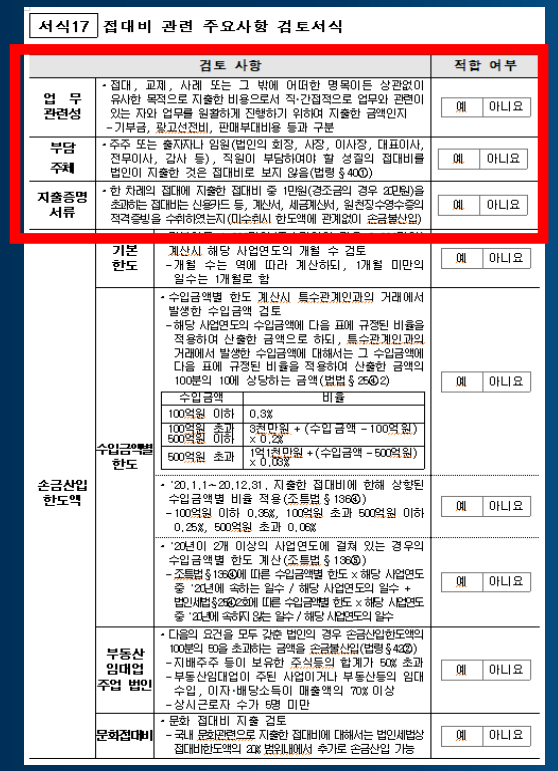

서식17 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 무 관련성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예 아니요
부담 주체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 §40①)	예 아니요
지출증명 서류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예 아니요
손금산입 한도액	기본 한도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 §25④2) 수입금액 / 비율 100억원 이하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예 아니요
		• '20.1.1~'20.12.31,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상향된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조특법 §136⑥)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3%	예 아니요
		• '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조특법 §136⑧) -조특법 §136⑥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법인세법 §25②2호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예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 §42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접대비	•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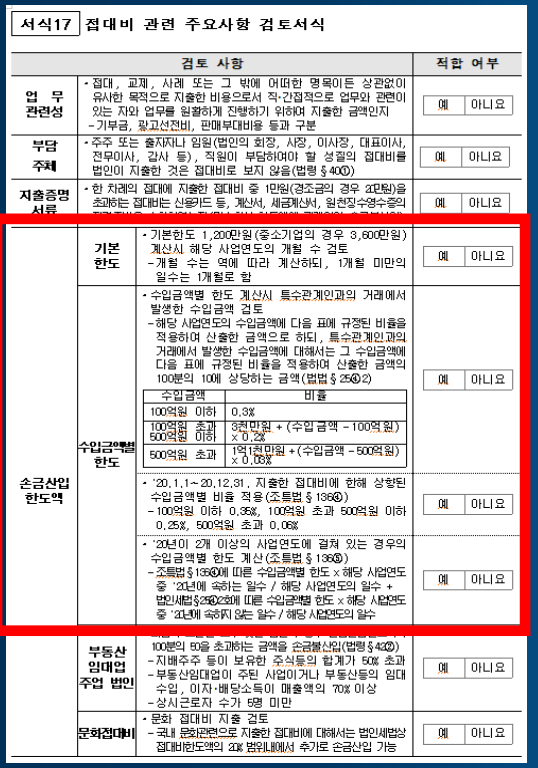

서식17 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 무 관련성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예 아니요
부담 주체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 §40①)	예 아니요
지출증명 서류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예 아니요
손금산입 한도액	기본 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 § 25④2)	예 아니요
		• '20.1.1~20.12.31,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상향된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조특법 § 136④) -100억원 이하 0.36%,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6%	예 아니요
		• '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조특법 § 136⑤) -조특법 § 136④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법인세법 § 25④2호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예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 § 42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접대비	•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서식 17

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 3-2

손금산입 한도액	기본 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 § 25④2)	예 아니요
		• '20.1.1~20.12.31,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상향된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조특법 § 136④) -100억원 이하 0.36%,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6%	예 아니요
		• '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조특법 § 136⑤) -조특법 § 136④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법인세법 § 25④2호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예 아니요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7

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 3-3

서식17 접대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 무 관련성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예 아니요
부담 주체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법령 §40③)	예 아니요
지출증명 서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예 아니요
손금산입 한도액	기본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 § 25④2) 수입금액 / 비율 100억원 이하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예 아니요
		▪'20.1.1~20.12.31, 지출한 접대비에 한해 상향된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조특법 § 136⑥)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5%, 500억원 초과 0.03%	예 아니요
		▪'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조특법 § 136⑧) -조특법 § 136⑥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법인세법 §25②2호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중 '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예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 § 42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접대비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손금산입 한도액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 § 42②)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접대비	▪문화 접대비 지출 검토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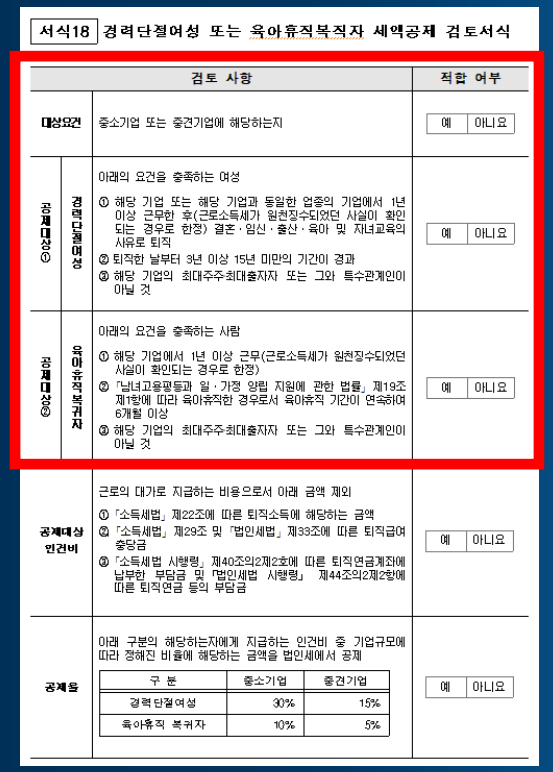

서식18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예 / 아니요
공제대상①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 아니요
공제대상②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 아니요
공제대상 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아래 금액 제외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예 / 아니요
공제율		아래 구분의 해당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 30% / 15% 육아휴직 복귀자 / 10% / 5%	예 / 아니요

서식 18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 2-1

서식18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예 / 아니요
공제대상①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 아니요
공제대상②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 아니요

Ⅱ- 8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8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 2-2

서식18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예 / 아니요
공제대상①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 아니요
공제대상②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 아니요
공제대상 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아래 금액 제외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예 / 아니요
공제율		아래 구분의 해당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 30% / 15% 육아휴직 복귀자 / 10% / 5%	예 / 아니요

공제대상 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아래 금액 제외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예 / 아니요
공제율	아래 구분의 해당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예 / 아니요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30%	15%
육아휴직 복귀자	10%	5%

Ⅲ.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사례

국세청 법인세과
National Tax Service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실제 사업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업종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 신고

부동산 시행사(부동산업)인 ㈜□□는 법인세 신고시
건설업(중소기업)으로 이월결손금 100% 공제하여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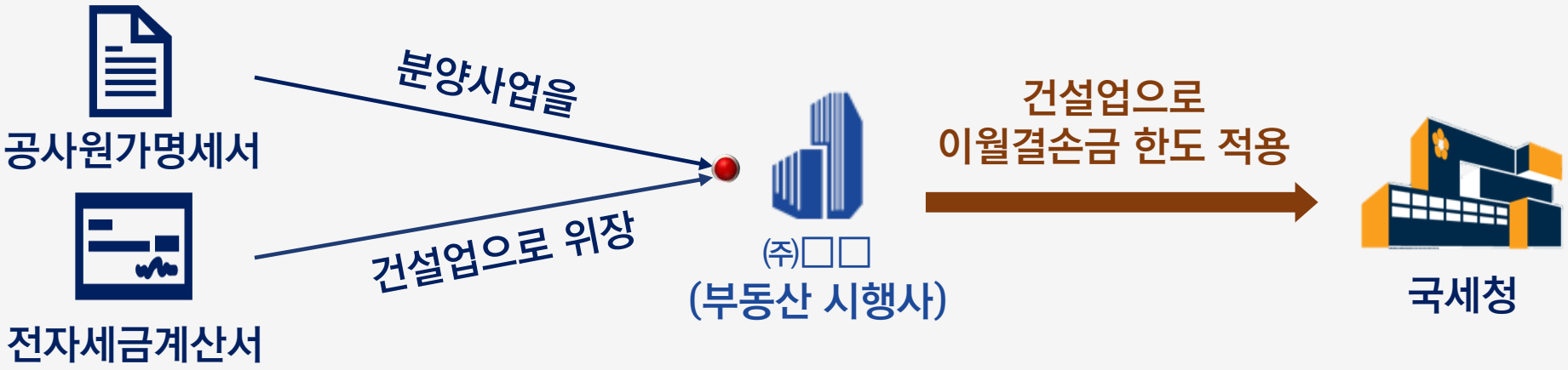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분양 · 공사)원가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부동산업 적용하여 이월결손금 한도초과 부인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대표이사 가족 인건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등 탈루

의료기기 보조시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는 해외에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하는 임원(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해외거래처, 출입국 기록, 해외자녀 유학 등을 분석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해외장기 체류자의 인건비를 R&D 세액공제 적용하여 법인세 탈루

이차전지소재 제조 법인 ㈜□□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R&D 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하여 신고

연구원의 출입국 내역 분석

해외 장기 체류자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부인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특허권 등의 양도로 법인자금 부당유출

법인소유의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 · 등록한 후
단기간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or 가지급금 정리

㈜□□는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 · 등록하고
단기간내 양도(사주 ↔ 법인)로 위장하여 사주의 가지급금 상환 및 개인계좌로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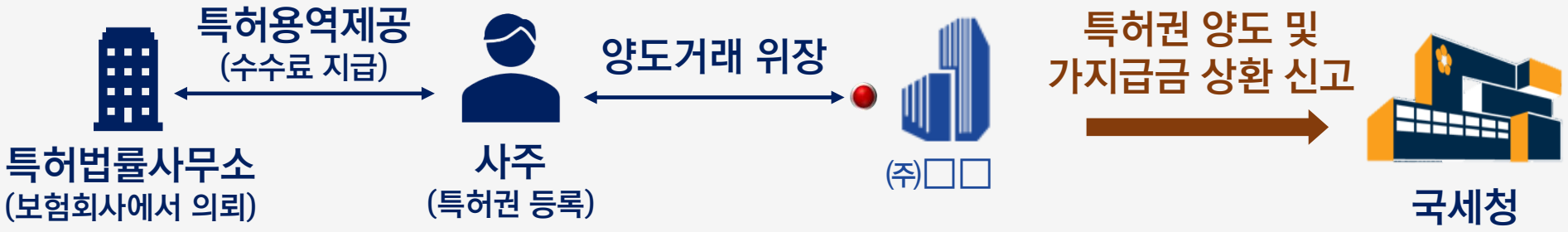

기타소득지급명세서 0억원 이상 법인 분석

특허권 허위 양도대금이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확인되어 대해 법인세 0억원 추징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헬스장 등) 이용권을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 유출

㈜□□는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접대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
업무관련 자산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후 관련 유지비용 계상

고가 콘도회원권 → 법인 명의 회원권 취득 → ㈜□□ → 매입세액공제, 유지 · 관리비 업무관련비용 계상 → 국세청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수집 · 분석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 관리비용 부인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의 농특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세액을 우선 공제해야 하나 공세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 누락

㈜□□는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 공제감면 세액을 우선 공제하여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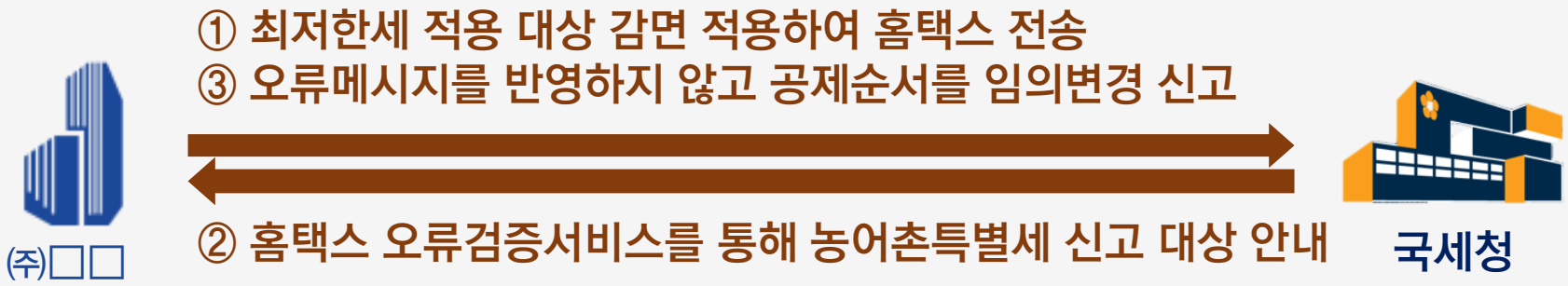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등 법인세 신고서 분석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세액의 농어촌특별세 0억원 추징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건설업을 영위하는 ㈜□□는 표준 B/S에 장 · 단기 대여금 계상액은 없으나
합계 B/S의 장 · 단기대여금 증감액은 계상하여 신고

특수관계법인 —대 출→ ㈜□□ (유통업) —가지급금 세무조정 누락→ 국세청

(연말) 가지급금 회수 처리, (익년초) 가지급금 발생

대차대조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분석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 받은 과징금을 세무조정 누락하여 법인세 탈루

건설업을 영위하는 ㈜□□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됨,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 ㈜□□ (건설업 법인) → 과징금 관련 세무조정 누락 신고 →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 수집 · 분석

벌금 · 과료 · 과태료 관련 과징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취득원가 과다 계상하여 분양차익 과소신고

물적분할시 승계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분양차익을 과소계상하고 관련비용(감가상각비)을 과다계상

주식회사 XX는 물적분할하여 ㈜□□를 설립하면서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 · 부채를 포괄승계함

관련 예규 · 판례를 수집 · 분석

자산 취득원가 과다계상 관련 분양차익 · 관련비용 경정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

광고업을 영위하는 ㈜□□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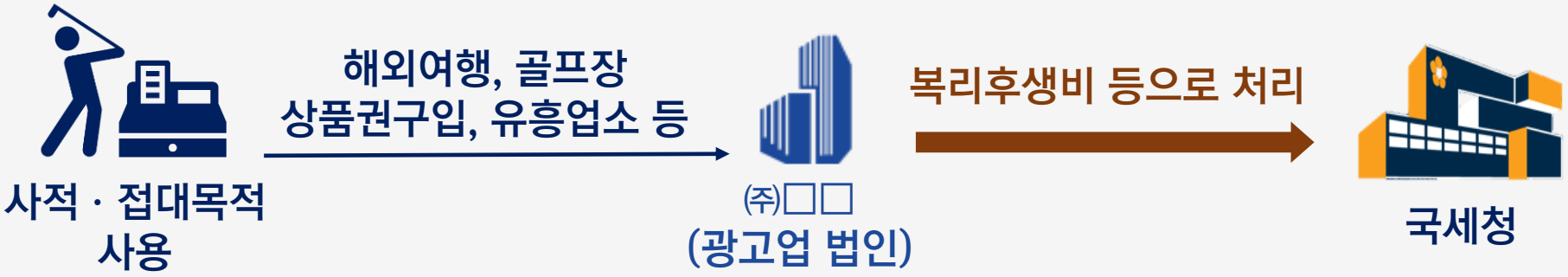

신용카드 사용 · 해명 자료를 검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공익법인 주식 취득 · 보유 요건 위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 5%초과 출연분을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증여세 탈루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계열 전 · 현직 대표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재)□□는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 받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함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충족

동일 내국법인 주식 5%초과 출연분에 대한 증여세 0억원 추징

공익법인 부동산 매각대금 고유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 외 임의 사용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 미사용하여 법인세 등 탈루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사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손금산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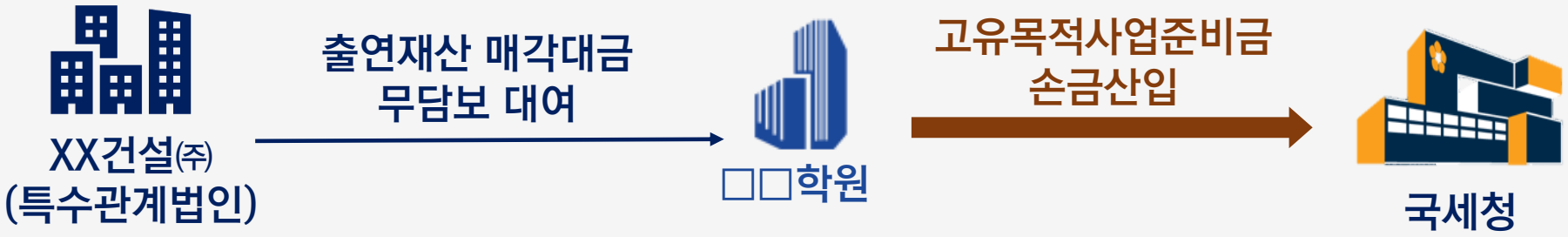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등 분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한내 미사용 · 출연재산 임의사용에 대한 법인세 등 0억원 추징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과다 신고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 · 간접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초과액을 계산 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하여 법인세 탈루

전기업을 영위하는 ㈜□□는 해외현지법인을 운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전액을 이월공제 신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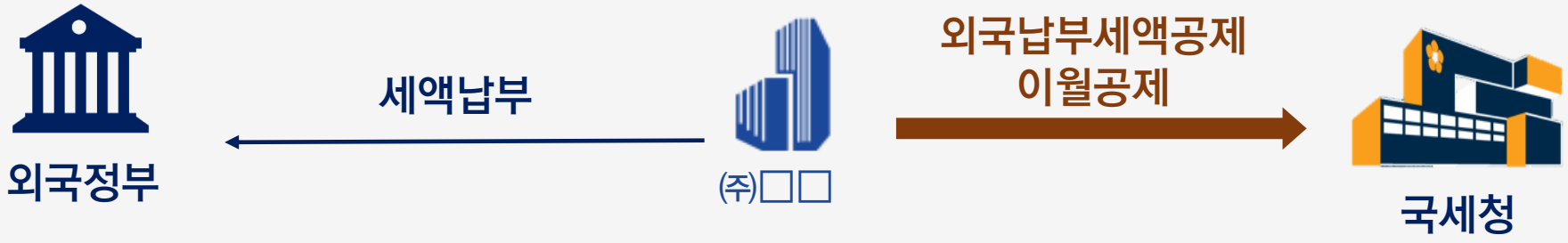

국외원천소득과 그에 대응하는 직 · 간접 경비 검토

직 · 간접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0억원 이월배제

소송관련 비용 부당계상

소송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확정 이전 사업연도에 소송관련 비용으로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 손해배상 비용 등을 소송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당기비용으로 계상

㈜□□ → 소송 진행 중 사업연도에 소요된 소송관련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계상 → 국세청

소송비용 및 산정액 적정성 여부 검토

손금산입 부적정 소송관련 비용 부인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바이오디젤연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하여 전액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고가차량 다수 보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

국세청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류 · 차량운행 기록부 검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비용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②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 하였음에도 100% 업무사용비율로 신고하여 법인세 탈루

산업용포장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하여 전액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
(고가차량 다수 보유)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이 이용)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국세청

차량 운행기록부 · 유지관리비 지출증빙 검토

특수관계인이 사적 사용 비용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③

업무용 리스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착오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법인세 탈루

건설업을 영위하는 ㈜□□는 고가의 리스승용차 3대를 보유,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하지 않고 관련비용 전액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

㈜□□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

(리스회사에 리스료 지급 및 계산서 수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분석 · 검토

리스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0억원 추징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감사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REPUBLIC OF KOREA

국세청